**정 관**

**피에스케이(주)<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공고방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제6조【일주의 금액】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8조【주식의 종류】

제9조【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0조【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1조【제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2조【제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3조 (삭제)

제13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4조【신주인수권】

제15조【신주의 동등배당】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제17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18조【명의개서대리인】

제19조 (삭제)

제20조【주주명부 작성·비치】

제2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3장 사 채**

제22조【전환 사채의 발행】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3조의 1【교환사채의 발행】

제24조【사채발행의 위임】

제2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4장 주주총회**

제26조【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시기】

제27조【소집권자】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제29조【소집지】

제30조【의장】

제3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32조【주주의 의결권】

제3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3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6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제3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38조【이사의 수】

제39조【이사의 선임】

제40조【이사의 임기】

제41조【이사의 보선】

제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43조【이사의 직무】

제44조【이사의 보고의무】

제45조【이사의 책임감경】

제4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8조【이사회의 의사록】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0조【위원회】

제51조【상담역 및 고문】

**제6장 감 사**

제52조【감사】

제53조【감사의 임기】

제54조【감사의 보선】

제55조【감사의 직무 등】

제56조【감사록】

제5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7장 계 산**

제58조【사업연도】

제5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6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제61조【이익금의 처분】

제62조【이익배당】

제63조【주식의 소각】

제6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8장 보 칙**

제65조【사규】

제66조【상법의 적용】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이 회사는 피에스케이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PSK INC.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제조장비, 플랫판넬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2. 산업용 기계 장비 제조 및 판매
3. 태양전지 제조장비의 제조 및 판매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5.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사업
6. 전자 상거래 관련 사업
7. 전기 목적에 관련된 기술용역이나 보수용역의 제공
8. 부동산 임대업
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1. 경영관리 서비스업
12. 전기 목적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k-in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14,765,02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내로 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제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존속기간을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 항에 의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다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합하여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주식 또는 제1종 종류주식과 동수이상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여 보통주식 또는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이때 전환 이후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11조【제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 1. 이 회사가 발행할 제3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이하 “제3종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내로 한다.
    2. 제3종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 및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제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제4종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다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합하여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제4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3. 제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4.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 에서 발행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상환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6. 이 회사는 제4종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발행된 제4종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제4종 종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이 회사는 제4종 종류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한다.
8. 이 회사는 본 조의 제4종 종류주식을 제10조에 의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9.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3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 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단, 상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단,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제1종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단,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7.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삭 제)

제20조【주주명부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2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22조【전환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중 200,000,000,000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00,000,000원은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1【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4조【사채발행의 위임】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6조【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7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3조 제②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이 회사가 제①항과 제②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3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38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이사의 보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인 이상을 선임한다.

제43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이사의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

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②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46조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0조【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상담역 및 고문】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52조【감사】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3조【감사의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54조【감사의 보선】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5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⑥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

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감사록】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58조【사업연도】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5. 제⑤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④항 또는 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2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식에 의한 배당을 위하여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①항의 배당은 제21조 제②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9조 ⑤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에 의한 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63조【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

각할 수 있다.

제6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 칙

제65조【사규】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상법의 적용】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 또는 상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 2, 제18

조, 제19조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 (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